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혁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784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10월 14일

발 의 자 : 송재혁, 강대호, 김경우,  
김기대, 김재형, 김정태,  
김제리, 김태수,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성흠제, 송명화, 송아량,  
송정빈,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유정희, 이광성,  
이정인, 장상기, 전병주,  
최웅식, 황규복 의원(29  
명)

## 1. 제안이유

-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서울시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및 유입주의 생물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임.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개정함
- 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규정함(안 제4장)
- 다. 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26조)
- 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규정함(안 제27조)
- 마.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사업을 규정함(안 제2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를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을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중 “자연환경은 법 제3조 각 호 및”을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은 법 제3조 각 호와”로, “제3항까지”를 “제3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자연환경보전을”을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을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연환경보전”을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자연환경의 보전”을 “자연환경보전과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자연환경보전”을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연환경보전”을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자연환경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한다.

제31조 앞에 “제5장 자연자산의 관리”를 삭제한다.

제35조 앞에 “제6장 시민참여”를 삭제한다.

제39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7조를 제40조로 하고, 제34조를 제37조로 하며, 제31조를 제34조로 한다.  
제6장제38조를 제7장제41조로 하고, 제35조를 제38조로 하며, 제32조를 제35조로 한다.

제39조를 제42조로 하고, 제36조를 제39조로 하며, 제33조를 제36조로 하고,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하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부합하는 서울특별시 생물다양성전략(이하 “생물다양성 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방안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기술개발, 교육
7.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7조(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사업)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래생물 분포 및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퇴치·방제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제29조 앞에 “제5장 자연환경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삽입한다.

제34조 앞에 “제6장 자연자산의 관리”를 삽입한다.

제38조 앞에 “제7장 시민참여”를 삽입한다.

제42조 앞에 “제8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자연환경보전법</u>」 및 「<u>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u>자연환경보전법</u>」(이하 “법”이라 한다)· 「<u>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u>환경정책기본법</u>」 및 그 밖에 환경분야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자연환경보전법</u>」, 「<u>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u>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 ----- ----- -----.</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u>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u>환경정책기본법</u>」, 「<u>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u>」-----</p>

제3조(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기본 원칙) 자연환경은 법 제3조 각 호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국내외의 도시 및 국제단체 등과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 등을 교류·협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법인·단체 및 그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기본 원칙)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은 법 제3조 각 호와 제3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관련

④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⑤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생략)

② 시민은 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장 자연환경정보의 관리 및 활용

<신설>

이용-----.

제5조(시민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

제4장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제26조(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부합하는 서울특별시 생물다양성전략(이하 “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방안

<신 설>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  
주의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기술개발,  
교육

7.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  
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  
최하여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7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서 정하는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  
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  
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  
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  
의 유지·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  
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  
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26조 ~ 제30조 (생 략)

제5장 자연자산의 관리

<신 설>

②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 사업)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래생물 분포 및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퇴치·방제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제5장 자연환경정보의 관리 및 활용

제29조 ~ 제33조 (현행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와 같음)

<삭 제>

제6장 자연자산의 관리

제31조 ~ 제34조 (생략)

제6장 시민참여

<신설>

제35조 ~ 제38조 (생략)

제7장 보칙

<신설>

제39조 (생략)

제34조 ~ 제37조 (현행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와 같음)

<삭제>

제7장 시민참여

제38조 ~ 제41조 (현행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와 같음)

<삭제>

제8장 보칙

제42조 (현행 제39조와 같음)

문서번호	2021100500000012
------	------------------

##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송재혁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박주용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10.05	
회신일 : 2021.10.12	내용문의 : 02-2180-7954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 787,500천원  
= 연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비용×5년  
= 157,000천원×5년

※ 연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비용 : 2021년 경기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체결’ 총사업비 450,000천원 중 도비 부담분 157,500천원 적용 (국비 30% 135,000천원, 도비 35% 157,500천원, 시·군비 35% 157,500천원)  
[참고자료] 2021년 경기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체결’ 예산 사업설명서 참조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예산분석관	박주용

☎ 02-2180-7954  
e-mail : pjooyong@seoul.go.kr

[참고자료] 2021년 경기도 '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 체결' 예산 사업설명서

<b>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 체결(국비/지원)</b> (사업 명세서 1411페이지)	정책사업	환경정책기반구축
	단위사업	자연환경보호
	기준보조율(%)	국 30, 도 35, 시군 35
	위원회의명	도시환경위원회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2019년 이전	2020년 투자			2021년 예산안 (C)	2020년 본예산 대비 증감 (C-A)	향후투자	비고
			계 (A+B)	당 초 (A)	추 경 (B)				
계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국 비	135,000	(135,000)	(135,000)	(135,000)		135,000		국고보조	
도 비	157,500	(157,500)	(157,500)	(157,500)		157,500			
시군비	157,500	(157,500)	(157,500)	(157,500)		157,500			
기 타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홍보물 사전심의	민간위탁 (대행) 사전심의	시범사업평가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10월	-	-	-	-	-	-	-	-

□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

(기준 : '20. 10. 31.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확보액(A)	사업비 집행 현황			집행률(%) (B/A)	사업 시행방법			비고
		집행누계액 (B)	계약액	집행(계약) 할 자		도직접	재배정	시군 보조	
계	877,500	877,500			100				
2018년	292,500	292,500			100			○	
2019년	292,500	292,500			100			○	
2020년	292,500	292,500			100			○	

- '20년 추진 실적 : 고양시 등 6개 시·군 보조 292,500천원 집행 완료
- 사업추진 자체평가 : 우수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환경국	환경정책과	자연생태팀	박종일 (8008-3530)	정택준 (8008-3535)	황금옥 (8008-3513)



## □ 세부사업 설명서

### 1) 사업 목적

-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 및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통해 관내 생물다양성 및 야생 생물 서식지 보전

### 2) 사업 근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 3) 사업 집행절차

- 예산교부('21. 6월) → 사업접수 및 대상자 선정 ('21.7월 ~ 9월) → 관리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21. 10월) → 추진상황 확인점검 ('21.11월 ~ 12월) → 잔금지급 ('21. 12월 한) → 정산 및 평가 ('22. 2월)

### 4)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내
- 사업기간 : 2021. 6. ~ 2022. 2.
- 사업량 : 주요 철새 도래지 764ha
- 사업시행방법 : 시·군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고양시, 화성시, 안산시,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 5)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세부 내역 : 해당 없음

### 6)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편성목 (통계목)	부기명	산출내역	2021년 예산안	2020년 예산	비고 (증감)
계			292,500	292,500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체결	[(벗짚존치 411천원/ha × 750ha) + (벼미수확 11,782천원/ha × 10ha) + (경작계약 6,000천원/ha × 4ha)] × 0.65% = 292,500천원	292,500	292,500	